

-별표1. 방문요양 요금표

분류번호	분 류	금액(원)	요 금			
			일반요금	의료수급자(6%,9%)		기초수급자
가-1	30분 이상	17,450	2,620	1,050	1,570	0
가-2	60분 이상	25,320	3,800	1,520	2,280	0
가-3	90분 이상	34,120	5,120	2,050	2,050	0
가-4	120분 이상	43,430	6,510	2,610	3,910	0
가-5	150분 이상	50,640	7,600	3,040	4,560	0
가-6	180분 이상	57,020	8,550	3,420	5,130	0
가-7	210분 이상	63,530	9,530	3,810	5,720	0
가-8	240분 이상	70,080	10,510	4,200	6,310	0

-별표2. 재가급여 월한도액

등 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 등급	일반 : 15% 의료,경감 : 6,9% 기초생활 : 0%
월 한도	2,512,900	2,331,200	1,528,200	1,409,700	1,208,900		

-별표3.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

서비스 제공시간	금액(원)
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에 급여제공시	[별표1]의 소정수가에 30%를 가산
「근로기준법」제55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및 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급여제공시	[별표1]의 소정수가에 50%를 가산
중복될 경우 「근로기준법」제55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및 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근로자 의 날에 급여제공 기준에 따른다.	

－ 별표4. 방문목욕 요금표

구분	수가	본인부담금			
		일반요금	의료수급자(6%, 9%)	기초수급자	
차량이용(차량 내)	88,990	13,349	8,009	8,009	0
차량이용(가정 내)	80,230	12,035	7,221	7,221	0
차량 미 이용	50,100	7,515	4,515	4,509	0